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채권자(이하 “갑”이라 한다)는(은) BNK신용정보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1 제1조 목적 |

이 계약은 “갑”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란 “갑”이 보유한 채권으로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경제조합·공금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예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2. “채무지”란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보증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권추심”이란 “갑”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추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3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 |

-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칙, 기준(이)디리안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제4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

-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③ 이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5 제5조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3.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5.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6 제6조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방법 |

- ① “을”은 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 대하여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채권의 원인관계에 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7 제7조 채권추심업무의 개시 |

- ① “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직접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제8조 협의 또는 통지에 관한 사항 |

- ① “을”은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2. 채권의 대물변제 또는 보합상환에 관한 사항
 3.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1. 제10조 및 제11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4.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변제를 하거나 변제의사를 밝힌 경우
 5. 채권을 포기, 면책 또는 감면한 경우
 6.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경우
 7.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인원을 제거하거나 기타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8.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9.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면책 또는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경우
 10.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변동이 있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 ③ “을”은 “갑”에게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 통지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통지로 갈음하기로 한다.
 - ④ “을”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사실” 통지나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제9조 변제금 수령 및 인도 등 |

- ① “갑”과 “을”은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변제일자와 변제금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을”이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전항의 수수료 외에 “갑”과 “을” 사이에 상호 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인도해야 할 변제금에서 상계한 후 해당 차액을 “갑”에게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산과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항의 인도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 제10조 채권추심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

을이 수임사실 통보서를 발송한 이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①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유가증권 등 현금성 있는 증서를 수령한 경우
- ② 채권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채무인수, 담보취득, 경계계약 체결된 경우
- ③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상계 처리한 경우
- ④ 채권 관련 변제공약으로 “갑”이 공탁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경우 및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공탁되어 종료일 이후에 출금된 경우
- ⑤ “갑”이 “을”과 사전 협의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 경우
- ⑥ “을”의 채권추심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해 “갑”이 변제를 받거나 변제가 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 ⑦ “갑”이 채무자를 상대로 취한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종료 “을”의 조력으로 “갑”이 변제를 받은 경우
- ⑧ 기타 채무자의 변제와 동등시 시 되고 판단되는 경우

11 제11조 채권추심업무의 중단 |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갑”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발송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1. 채무면제, 위임무효, 파소확정,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4.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6.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해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7. 기타 채권추심업무 수행 결과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 의지가 희박하여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제12조 비용부담 |

- ① “을”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인신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갑”과 “을”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절차 비용은 발생 시마다 “갑”이 부담한다.

13 제13조 수수료 등의 지급 |

- ① “갑”은 “을”이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제10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채권과 관련하여 변제일 또는 제10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전항과 별도로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기타 수수료 또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역에 따르기로 한다.

14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①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을”이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1. “을”이 이 계약에 위반하여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을”에 대한 감독기관의 채권추심업무 또는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3. “을”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관련 법규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을”의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을”이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채권을 추심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6. “을”이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한 경우
 7. “을”이 6개월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채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말소, 기타 관련 법규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③ 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을”이 이미 수행한 채권추심업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을”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라 “갑”은 “을”에게 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5 제15조 추가위임 |

이 계약체결일 이후 추가로 위임 받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16 제16조 중복 추심위임 금지 |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제3자와 이중으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제17조 비밀유지 |

-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에 관한 일체의 신용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18 제18조 지연손해금 |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변제금 인도 또는 수수료나 비용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19 제19조 손해배상책임 |

-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②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시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는 업무 수행 불능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20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로 한다.

21 제21조 합의관할 |

-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전항에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채권자(이하 “갑”이라 한다)는(은) BNK신용정보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1 제1조 목적 |

이 계약은 “갑”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란 “갑”이 보유한 채권으로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경제조합·공금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예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2. “채무지”란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보증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권추심”이란 “갑”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추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3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 |

-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칙, 기준(이)디리안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제4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

-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③ 이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5 제5조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3.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5.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6 제6조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방법 |

- ① “을”은 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 대하여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채권의 원인관계에 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7 제7조 채권추심업무의 개시 |

- ① “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직접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제8조 협의 또는 통지에 관한 사항 |

- ① “을”은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2. 채권의 대물변제 또는 보합상환에 관한 사항
 3.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1. 제10조 및 제11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4.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변제를 하거나 변제의사를 밝힌 경우
 5. 채권을 포기, 면책 또는 감면한 경우
 6.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경우
 7.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인원을 제거하거나 기타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8.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9.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면책 또는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경우
 10.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변동이 있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 ③ “을”은 “갑”에게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 통지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통지로 갈음하기로 한다.
 - ④ “을”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사실” 통지나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제9조 변제금 수령 및 인도 등 |

- ① “갑”과 “을”은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변제일자와 변제금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을”이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전항의 수수료 외에 “갑”과 “을” 사이에 상호 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인도해야 할 변제금에서 상계한 후 해당 차액을 “갑”에게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산과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항의 인도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 제10조 채권추심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

을이 수임사실 통보서를 발송한 이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①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유가증권 등 현금성 있는 증서를 수령한 경우
- ② 채권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채무인수, 담보취득, 경계계약 체결된 경우
- ③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상계 처리한 경우
- ④ 채권 관련 변제공약으로 “갑”이 공탁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경우 및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공탁되어 종료일 이후에 출금된 경우
- ⑤ “갑”이 “을”과 사전 협의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갱입한 경우
- ⑥ “을”의 채권추심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해 “갑”이 변제를 받거나 변제가 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 ⑦ “갑”이 채무자를 상대로 취한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종료 “을”의 조력으로 “갑”이 변제를 받은 경우
- ⑧ 기타 채무자의 변제와 동등시 시 되고 판단되는 경우

11 제11조 채권추심업무의 중단 |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갑”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발송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1. 채무면제, 위임무효, 파소확정,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4.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6.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해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7. 기타 채권추심업무 수행 결과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 의지가 희박하여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제12조 비용부담 |

- ① “을”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인신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갑”과 “을”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절차 비용은 발생 시마다 “갑”이 부담한다.

13 제13조 수수료 등의 지급 |

- ① “갑”은 “을”이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제10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채권과 관련하여 변제일 또는 제10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전항과 별도로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기타 수수료 또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역에 따르기로 한다.

14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①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을”이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1. “을”이 이 계약에 위반하여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을”에 대한 감독기관의 채권추심업무 또는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3. “을”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관련 법규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을”의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을”이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채권을 추심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6. “을”이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한 경우
 7. “을”이 6개월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채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말소, 기타 관련 법규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③ 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을”이 이미 수행한 채권추심업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을”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라 “갑”은 “을”에게 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5 제15조 추가위임 |

이 계약체결일 이후 추가로 위임 받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16 제16조 중복 추심위임 금지 |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제3자와 이중으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제17조 비밀유지 |

-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에 관한 일체의 신용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18 제18조 지연손해금 |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변제금 인도 또는 수수료나 비용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19 제19조 손해배상책임 |

-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②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시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는 업무 수행 불능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20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로 한다.

21 제21조 합의관할 |

-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전항에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채권추심위임계약서 (회사용)

20 년 월 일 귀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귀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수집 이용목적 :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식별정보
 - 채권금액, 추심수수료율, 신용조사료 등의 거래조건, 거래 일시 등의 거래 정보
- 보유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갑” 위임자	상 호	
	주 소	
	성명(대표자)	(인)
“을” 수임자	상 호	
	주 소	
	성명(대표이사)	